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

2023. 12. 14.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
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[제정]

1 시청사유 (기업구조개선과, 2023. 12. 12.)

- (개정 내용) 기존 규정은 모법인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일몰 ('23.10.16일)에 따라 실효되었으나, 동 법의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기존 감독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
- (신청 사항)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의 '24.1.2일 공포・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불가피하게 하위법령 공백*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, 구조조정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
 - *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

2 검토 내용

- 최근 급증하는 구조조정 수요*에 대응하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 재가동의 시급성 및 감독규정에 실질적 개정사항이 없다는 점 등 감안 시 입법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 - * '23년 상반기 법인 회생·파산 신청건수는 1,208건(회생 484, 파산 724)으로 전년 동기(755건: 회생 303, 파산 452) 대비 60% 증가
 - ※ 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0조등에 따라 **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 예고가 원칙**이나 **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.단축도 가능**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○ **사전예고 기간** : '23.12.18. ~ 12.26.(8일간)